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59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철규·서일준·주호영

강승규 • 박준태 • 김선교

김기현 • 박상웅 • 나경원

조정훈 • 우재준 • 박충권

유상범 · 김은혜 · 조지연

이인선 • 김석기 • 김정재

김희정 • 박수민 • 박정하

김민전 · 조배숙 · 김 건

김장겸 • 박대출 • 박성민

서천호 • 신동욱 • 인요한

백종헌 • 신성범 • 주진우

이상휘 • 서지영 • 최은석

박덕흠 • 송언석 • 정희용

곽규택 의원(40인)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에 부응하여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탄소 에

너지원인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에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 한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고사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나라도 원 전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산업계는 정책환경의 변화 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전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기조와 소형모듈원전 보급 등으로 새롭게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 원전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

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실증, 클러스터 지정·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원전수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원전산업과 소형모듈원전, 원전수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제6조).
- 라. 원전산업 지원 정책 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마. 원전산업 지원 목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발 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전전년도 전력생산 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안 제8조·제9조).

- 바. 정부는 원전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금융 및 세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 10조·제12조 및 제14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3조).
- 아.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전 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있도록 함(안 제15조).
-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6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 사와 협의 후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전 클러 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원전수출사업자의 국 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22조).
- 타.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인·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우선처리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4조).

파. 원전산업 관련 기업, 기관, 단체와 업무종사자 등은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86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86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4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상용화 및 원전수출 등 원전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원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원전의 건설ㆍ제작ㆍ시운전ㆍ운영ㆍ정비ㆍ해체
 - 나. 가목과 관련된 기자재, 원전연료 등 물품의 제조·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 다.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상용화, 수출
- 3. "원전기업"이란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4. "소형모듈원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와 관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란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6. "원전수출"이란 원전, 원전 관련 기자재 및 원전연료 등의 물품과 원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 해체와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전수출사업자"란 원전수출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8. "원전산업지원전담기관"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산업경쟁력 유지·발전 에 필요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기술의 발전, 그 밖의 원전산업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원전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등 필요한 절차가 원 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원전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전 기업과 원전수출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원전산업 지원 관련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등

- 제5조(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원전수출 등(이하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전산업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원전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형모듈원전의 보급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5.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원전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원전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협회·단체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원전산업지원위원회) 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사항
 - 3.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원전산업발전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7. 원전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8. 원전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2. 원전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 금
 - 4. 제9조에 따른 부담금
 - 5. 에너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6.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지원
- 2.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지원
- 3. 제12조에 따른 금융 등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투자 활성화 지원
-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6. 제16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 7. 제17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원
- 8. 제1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활용 지원
- 9. 제19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지원
- 10. 제20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11. 제21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2. 제22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지원
- 13. 제27조에 따른 위임·위탁된 기관에 대한 지원
- 14.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때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때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의 안정적 납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있다.
 - ④ 부담금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자에 대한 특례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제10조(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② 정부는 원전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및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인증・인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지원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절차 및 수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급망 안정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연료, 원전 핵심기자재 등에 대한 원전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원할수 있다.
 - 1. 공급망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 2. 공급망 안정화 관련 품목의 선정
 -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 4.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5. 그 밖의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원전연료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4조를 준용하며,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급망 강화 사업의 선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전기업이 나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원전기업이나 원전수출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수 있다.
 -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원전기업이나 원전수 출사업자에게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투자 활성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소형모듈원전, 원전수출, 원전산업 기자재 및 원전연료 공급망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제8조의 원전산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전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 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설치·운영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 2. 미래 원전산업 유망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
 - 3.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 4. 원전기업 퇴직 인력의 재취업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공 급 활성화
 - 5.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 촉 진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원전연료, 원전 핵심 기자재 등 원전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지원
 - 2.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실증, 소형모듈 원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 지원
 - 3. 제20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4. 그 밖의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 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안정적인 원전산업의 생태계 구축, 미래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소형모듈원전의 보급 • 확산 지원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 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전의 연 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증, 실증을 위한 원자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확정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부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사항 등 실증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 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입주 예정 기업을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 ㆍ 기술적 지원
- 2.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술 개발시설, 실 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 3.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 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 익 허가 또는 대부·매각 허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관리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 2.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3.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 4.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소형모듈원전의 활용 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소형모듈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소 생산 등에 활용
 - 2. 소형모듈원전에서 발생한 열이나 증기를 산업현장 등에 활용
 - 3. 그 밖에 소형모듈원전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소형모듈원전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소형모듈 원전 클러스터의 지정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전력시장 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구역 안에서 전기공급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등) ① 정부는 소형 모듈원전에 관한 국제동향조사,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해외 소형모듈원전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 공유
 - 2. 국가별 소형모듈원전 관련 제도·정책의 조사·분석
 - 3. 소형모듈원전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 4. 소형모듈원전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5. 소형모듈원전 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 6. 그 밖에 소형모듈원전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전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원전수출사업자 지원

- 제20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원전수출사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2.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융자 · 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 3. 그 밖에 원전수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

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원전수출 보증을 위한 자금
- 2. 원전수출을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3. 원전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 자금
- 4.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필요한 개발자금
- 5. 그 밖에 원전수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전수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교화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① 원전수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원전수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수 있다.
 -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 3. 그 밖에 원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수 있다.
- ③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원전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원전수출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원전수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 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협회 등의 설립) ① 원전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와 이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전산업 관련 종사자등"이라 한다)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제17조·제2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제2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29조(벌칙)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